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26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인재근・소병훈・허 영

송갑석 · 기동민 · 김원이

최혜영 · 최종윤 · 강선우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관계로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 5조제5항).

법률 제 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 항제5호의2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	5
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공개</u>
	하는 정보의 항목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제5
	호의2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
	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u>여야 한다.</u>